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. 4. 25 선고 2023가단21614 판결 [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주, 이완수, 김지혜, 한승빈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3. 28.

판 결 선 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3. 3.부터 2024. 4. 2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8,39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0. 1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19. 7. 6.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신축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,987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정한 공사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 선금으로 '계약시 10% 이후 단열자재인 ICF 자재(이하 '이 사건 자재'라 한다) 현장 도착시 계약액의 40%를 지급'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원고는 피고에게 2019. 7. 6. 계약금 28,395,000원을, 2020. 1. 1. 중도금 50,000,000원을 각 지급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지의 명의변경이 어려워져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.

라. 피고는 2020. 10. 16. 원고에게 20,000,000원을 반환하였다.

마. 원고와 피고는 2021. 3. 2.경 이 사건 공사 해지와 관하여,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반환받으면 원고에게 기수령한 공사대금 중 남아있는 58,395,000원을 반환하되, 그 간의 설계 및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 확인서(이하 '이 사건 확인서'라 한다)를 보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9, 20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기 수령한 공사대금 중 미반환한 58,395,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계, 기획, 도면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, 이 사건 자재를 제작, 납품하였는바, 이 사건 자재의 재사용시 가액은 17,500,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4,280,000원 상당이므로, 피고에게는 더 이상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.

3. 판단

가. 법리

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나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서,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다.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,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,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.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(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8다223139 판결, 1997. 12. 12. 선고 97다5060 판결,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다40109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(1)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20,000,000원을 반환한 2020. 10. 16.경, 혹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2021. 3. 2.경 합의해지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.

(2)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본다.

을 제19,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반환받은 후

58,395,000원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기획, 설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58,395,000원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(3) 마지막으로 피고가 반납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관하여 본다.

○ 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 등 지출 내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제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설계도면에 대하여 수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고, 피고는 어느 정도 설계 도면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확인서에도 ‘그 간의 설계 및 행정비용 등을 제외하고 정산’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, 원고는 2023. 10. 12.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공사 계획, 행정 업무, 설계도면 작성 등의 기성고가 28,395,000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피고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8,395,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

○ 피고는, 이 사건 자재가 장시간 태양열에 노출되어 황변형상이 일어나고 변형되어 32,500,000원 상당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, 이를 반환받고 처리하는 비용이 4,280,000원이므로 위 금액도 반환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재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설령 이 사건 자재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자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내지 협력할 의무를 넘어 이를 직접 피고에게 인도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(민법 제467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),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재 수거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재가 장시간 방치되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(4) 소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78,395,000원에서 기반환금 20,000,000원과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 28,395,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자재를 회수하지 않은 다음날인 2021. 3. 3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4. 25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혜원